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심사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기준 개정(안 제10조)

-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1일 50,0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료 7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인상의 원인이 제기 되었으나 규칙에 수당 지급액을 명시함으로써 지침변동에 따른 규칙개정 등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사전제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4. 검토의견**

본 규칙 개정안은 2004년 예산편성지침의 민간인회의 참석 수당지급액이 상향조정되어 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상향 조정함에 있어 지급액을 정액으로 명시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시마다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개선하고 수당지급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4. 검토의견

##### 가. 예산안 총괄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589억4,117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06억1,633만2천원, 의료보호기금등 6개 특별회계 183억2,4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나. 일반회계

######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06억1,633만2천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이 488억6,449만4천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4,100만원, 조정교부금 327억2,593만3천원, 제정보전금 13억9,618만4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553억8,870만1천원등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4.43%인 177억3,105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1억9600만원과 종합토지세 8억1200만원 사업소세 2억원등 대형건축물 준공등 특수요인은 없으나 건축경기화성화에 따른 소형주택증가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당초예산보다 징수율이 높아져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되었고 사업장 일제조사로 사업소세가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측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7,825만5천원 감소하였고 수수료 수입중 중지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6억원 감소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6억2백만원을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7,777만4천원 증가하였으

며 자금의 조기교부로 인한 자금운용 장기화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5,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매각수입 1억3,252만1천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2억5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 및 자동차관련 과태로 수입이 5,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계약위약금 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등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2억4,100만원이 배정되어 다대파출소~수협간 도로개설비 10억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주변 도로개설 7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사업예산으로 신규편성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3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이중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3,500만원은 태풍‘매미’ 피해 복구비 1억6,500만원 해수욕장 운영지원과 하단오거리 주변정비 7,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 55억9188만7천원과 시비보조금 36억2,45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20억5,243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3억2,095만1천원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비 4억1,730만8천원등 저소득 주민보호와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보장적 경비와 태풍‘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처리 7억608만원, 피해어선 복구비 6억7,922만8천원,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비 23억7,224만5천원 등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 복구경비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06억1,633만2천원이며 이를 기

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73억6,069만8천원 사회개발비 705억 4,971만9천원 경제개발비 254억4,648만9천원, 민방위비 2억 2,164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억3,777만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질별로는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등 인건비는 소폭 증액 되었으나 일반운영경비는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기반시설과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등 투자사업비에 94억7,92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인 물건비등은 감소되었으며 이전 경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태풍‘매미’로인한 피해주택 복구비등은 신설 및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 있어 태풍‘매미’로 인한 각종 재해복구공사비 39억9,389만6천원이 편성되는등 투자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기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인건비등 일반운영경비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시행중인 투자사업비등을 가감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다대파출소~수협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도로개설비 7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도로무단 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등 지방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과 괴정3파출소옆 도로개설과 괴정1동 서화의원~한신APT간 도로개설공사 영아 전문 보육시설 신축, 당리어린이집 건립등은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등에 역점을 들어 편성 되었습니다.
- 또한 2003년에 시행 완료하지 못하고 2004년으로 이월하는 명시

이월 사업비가 41건 196억8,796만1천원이며 세부내역 별로는 어린이집 건립 및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11억5,220만원, 노인요양시설 중·개축 및 정신요양원 기능보강비 17억6,517만7천원,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개설사업이 17건 104억9,950만2천원,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공사등 태풍‘매미’로 인한 재해복구공사 4건 28억3,765만7천원등이 년내 시행완료 되지 못하고 명시 이월되는 것은 주민협의지연,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교부금등이 늦게 배정되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 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183억 2,483만8천원으로 1차 추경시보다 8억7,443만9천원 5.01%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8,747만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3,823만2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2,008만9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2억5,499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90억5,131만4천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2억5,82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6억8,142만7천원이 예비비로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특별지원금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구평동 복지회관, 경로당, 한센간이양로시설비로 책정되었으며 기타 회계는 초과수입과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등을 예비비에 가감정리 편성되었습니다.

-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감천1지구 도로개설공사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구평동 복지회관 및 경로당, 한센간이양로원 시설 건립비등 2건에 18억 9,439만2천원으로 주민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등 세입재원별 목표액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변 경내시액 가감정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절감 부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예비비43억5,002만6천원의 추가 계상은 전년대비 7억8,320만3천원 감소되었다고하나 아직도 전전한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불용액 발생 억제등으로 가용 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의 본 추경후 2003년 12월31일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심의 하여야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함으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